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
- 나.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급근거를
명시하여 공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훈 대상자에 대한 위로, 격려 지급근거 신설(안 제5조 제10항)
- 나. 보훈 예우수당 지급 시기 변경(안 제10조 제3항)
- 다.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보훈관련 기념일·행사와 설·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

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·격려

제7조제4호 중 “호적등본”을 “가족관계증명서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분기말”을 “월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</u>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</u> <u>요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<u>의하여</u>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<u>의한</u>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	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· 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	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) 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
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국가
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
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
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호적등본 등 제증명발급 수
수료 감면

5. ~ 7. (생략)

제10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시기) ①·② (생략)

③ 수당은 매 분기말에 수급권
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.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보훈관련 기념일·행사와
설·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
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
로·격려

제7조(복지지원 등) 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가족관계증명서 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시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월말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-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보훈관련 기념일·행사 및 설·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5조 10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보훈관련 기념일·행사에 따른 위문금품을 지원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(지원액 : '17년 28,000천원, '18년 32,500천원, '19년 33,500천원)

4. 작성자

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 김익기(480-5102)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변 동 석
	담 당	이 민 수
	담 당 자	김 익 기 (480-5102)